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36 호 2022. 3. 24.(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85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62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6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73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문 공시송달공고] ·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74호[공시송달 공고]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80호[「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91호[행정대집행 계고서]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95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 19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2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85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녹취정보의 부정한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이하 “녹취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전화에 따른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송신 또는 수신한 녹취시스템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녹취시스템의 운영과 녹취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녹취시스템을 사용하여 녹취정보를 발생시킨 부서를 말한다.
6. “전수녹취”란 녹취안내를 사전고지 후 전화가 연결되며 모든 통화내용이 녹취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의회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장소) 녹취시스템은 관리부서인 정보통신실에 설치한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녹취시스템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취시스템 정책임자: 관리부서의 장
2. 녹취시스템 부책임자: 관리부서의 담당 주무관
3. 녹취시스템 관리자: 녹취시스템 업무담당자

제6조(녹취시스템 사용자) ① 녹취시스템 사용자는 녹취기능이 가능한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공무원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녹취를 사용하고자 하는 녹취시스템 사용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 인허가, 단속, 복지 등 고질. 반복 민원이 많은 경우
2.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으로 직원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녹취 시 사전고지) 녹취시스템 사용자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화

상대자에게 녹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녹취정보 관리) ① 녹취시스템에 저장된 녹취정보는 90일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자동 삭제되도록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녹취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녹취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제공된 녹취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당사자가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의 모든 책임은 사용부서의 당사자에게 있다.

제9조(녹취정보 열람, 제공의 절차) ① 녹취정보는 녹취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등을 위해 문서로 요청받은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문서로 요청받은 경우
6. 그 밖에 긴급한 재난 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녹취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녹취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부서는 녹취정보를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녹취정보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녹취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받은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녹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녹취자료 제공 제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리부서의 장이 제8조제3항에 의거 녹취자료 제공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녹취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출시킨 사람
2.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녹취정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전수녹취 적용·해지 신청서

신청인	성명		부서명	
	담당업무		행정전화	
구분	적용 <input type="checkbox"/>		해지 <input type="checkbox"/>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수녹취 기능을 적용/해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전화 녹취정보 제공 신청서

신청인	성명		직급(직위)	
	부서명 (담당)			
녹취 정보	녹취일시		행정전화	
	신청목적		당사자와의 관계	
	신청근거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취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별지 제3호서식]

녹취정보 보안서약서

1. 녹취정보 내용

녹취일시	행정전화	신청목적	녹취 파일 수	비고

2. 서약 사항

- 본인은 녹취정보를 인수하면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본 녹취정보는 신청목적을 달성 시 즉시 삭제·파기하고 그 결과를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명(담당): • 성명:
인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 직급: • 성명: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녹취에 관한 명시적인 법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따른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 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운영 규정의 적용 범위(제3조)
- 녹취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
- 녹취정보 제공의 절차에 관한 사항(제9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3. 22.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매곡동 산113-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230m²
 - 나. 기 간 : 2022. 3. 22. ~ 2026.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박*호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매*로*5 율*시티 11*동*80*5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6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갯골1길 31	호계동 583	2022. 3. 24.	건축물 멸실
호계1길 7	호계동 873-4	2022. 3. 2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3.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73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21. ~ 2022. 4. 5.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0길 7-3	최**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 50B 1L (진장로 28)	김**	조경훼손(훼손면적 10.1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314,000
3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42	정**	무단신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3,852,000
4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61	박**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128,000
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36길 4	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576,000
6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 152	하**	무단신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12,247,000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7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266-4	한**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3,715,000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285,000
8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4-1	히**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3,771,000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374호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호계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3. 18. ~ 2022. 4. 1.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783-22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60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4. 1. (금)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호계동 783-2번지 일원)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8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당사자 부재·폐문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대상 업소

신고번호	업소명 (업종)	영업자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내용
2019 0258853	수산물직판장 (일반음식점)	황*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107, 지상1층 (호계동)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2. 공고 기간: 2022. 3. 24. ~ 2022. 4. 7.(14일)

3. 열람·확인 기간 및 장소 : 2022. 4. 7.(목) 09:00~18:00, 북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 (4층)

4. 유의 사항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시, 청문조서 원안 확정되어 청문이 종결되며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처분(열람·확인)에 대한 문의: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 052-241-778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9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2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04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적치물을 2022년 3월 18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2년 4월 8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하천법」 제7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39번지	불법 적치물 (텐트, 의자 등)	4㎡	불법 적치물 철거

2022 년 3 월 23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95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2. 3. 23. ~ 2022. 4. 13. (21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번	기존설치지	이전설치예정지	비 고
1	울산 북구 호계동 265-10	울산 북구 호계동 664-9	
2	울산 북구 호계동 251-7	울산 북구 창평동 484-5	
3	울산 북구 호계동 663-1	울산 북구 중산동 682-25	
4	울산 북구 호계동 461-1	울산 북구 중산동 534-1	
5	울산 북구 중산동 939-3	울산 북구 천곡동 963	
6	울산 북구 천곡동 984-3	울산 북구 시례동 330-1	
7	울산 북구 연암동 304-1	울산 북구 진장동 723-4	
8	울산 북구 연암동 184-2	울산 북구 진장동 626	
9	울산 북구 명촌동 766-9	울산 북구 진장동 686-4	
10	울산 북구 염포동 139-1	울산 북구 진장동 827-1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환경미화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연암동)

○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052-241-7804

